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세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범위 확대〉
■ 구자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47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4
※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12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13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구자근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3. 14.
3. 회부일 : 2025. 3.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규정된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와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 관련 범죄 수사 중에 사기·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됐거나 의심되더라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에게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를 수단으로 한 「형법」 제347조(사기) 및 제355조(횡령,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호사목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관세 관련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에 더하여, 관세 관련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14호제4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 ~ 13. (생략)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 바. (생략) <u><신설></u>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 ----- ----- ----- -----. 1. ~ 13. (현행과 같음) 14. ----- ----- 가. ~ 바. (현행과 같음) <u>사.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u>

현행	개정안
15. ~ 50. (생략)	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 제347조, 제352조(제34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제355조 및 제359조(제35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범죄 15. ~ 50.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가.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운영 현황

□ 현행법은 세관 공무원에게 「관세법」(이하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에 규정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¹⁾.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7. 「관세법」에 따라 관세범(關稅犯)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세관공무원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로 한정한다.

14. 제5조제17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범죄

가.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범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범죄, 수출입 물품의 통관 및 환적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지급수단·증권의 수출입에 관한 범죄,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수출입거래에 관한 범죄, 수출입거래와 관련되거나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3호·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의 용역거래·자본거래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범죄,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외국환업무를 한 자와 그 거래 당사자·관계인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범죄

나.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사범

다.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라. 소속 관서 관할 구역 중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공항·항만과 보세구역에서 발생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사범

마.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목에 규정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바.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수출입물품 및 그 가공품(「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관련된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수입물품에 대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약사법」 제42조, 제4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1조(「약사법」 제56

- 이에 따라 현재 관세청은 서울세관·부산세관 등 각 지역의 본부세관을 중심으로 총 521명의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음.

<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인원수(2024년도 말 기준)>

연번	본부세관	인원	
		특별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리
1	인천공항세관	55	64
2	서울세관	112	67
3	부산세관	55	38
4	인천세관	32	33
5	대구세관	13	8
6	광주세관	22	12
7	평택세관	8	2
합계		297	224

자료: 관세청

- 관세청의 특별사법경찰 운영성과를 살펴보면, 관세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연평균 약 1,000건의 검거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5년간 연평균 약 2,200건의 검거실적을 보임.

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한정한다),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65조의2, 제65조의3 및 제66조, 「화장품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6조를 위반한 범죄

< 연도별 관세청 수사권 범죄 검거 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관세		지재권		대외 무역법		외국환 거래법		특경법 (재산 도피)		범수법		마약		형법 (문서인장죄)		보건 범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	1,045	9,264	176	2,602	108	1,369	130	7,189	7	362	10	302	696	1,592	-	-	62	694
'21	652	8,855	87	2,339	117	2,900	110	13,495	3	84	6	155	1,054	4,499	-	-	39	324
'22	837	7,877	99	5,639	103	4,670	129	63,346	3	82	3	180	771	600	2	-	44	216
'23	1,272	12,958	97	3,713	84	3,679	184	18,062	2	88	8	1,430	704	613	-	-	36	250
'24	1,240	10,385	80	1,705	123	3,391	252	22,257	1	7	6	1,950	862	866	-	-	25	112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연간 총 검거건수	2,234	2,068	1,991	2,387	2,589

* 문서인장죄 범칙금액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음
자료: 관세청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세관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범죄가 사기 및 횡령, 배임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목적 범죄인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죄에 대하여도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권을 가지나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죄에 대한 수사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등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단으로 한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죄의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이를

일반 경찰에게 인계해야 함.

□ 개정안에 따라 세관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가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죄의 수단 범죄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죄를 추가하는 것은 수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먼저, 개정안에서 세관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추가하려고 하는 범죄는 “「관세법」 등 위반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횡령, 배임죄”이므로 이에 대한 수사는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요구하는데,

세관 공무원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징수 업무,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업무, 외국환관리법 위반행위 단속업무 등의 관세청 업무수행을 통해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일정한 전문성이 인정됨.

○ 또한, 수출입거래 또는 외국환거래 업무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세관 공무원에게 “「관세법」 등 위반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상의 사기죄와 횡령, 배임죄”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관련 범죄를 보다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으며 적발 현장에서의 증거채집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등 수사의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특별사법경찰은 행정공무원 등에게 강제수사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일반사법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바, 개정안에서 추가하는 ‘사기 및 횡령, 배임죄’ 등의 일반 형법상 범죄는 그 성립여부를 판단할 때 행정형법상 범죄에 비하여 형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있어 특별사법경찰에게 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상 일반 형법 범죄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예는 ① 장소적 특수성을 고려한 경우로서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교정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경우,²⁾ 기내 및 선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기장 및 선장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경우와,³⁾ ② 출입국관리 공무원⁴⁾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공무원 의제 등) ③ 민영교도소등의 장 및 직원은 「형사소송법」이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교도관리로 본다.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선장과 해원 등) ① 해선(海船)[연해항로(沿海航路) 이상의 항로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20톤 이상 또는 적석수(積石數) 2백 석 이상의 것]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선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사무장 또는 갑판부, 기관부, 사무부의 해원(海員) 중 선장의 지명을 받은 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항공기 안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기장과 승무원이 제1항에 준하여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교도소장 등)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과 세관 공무원에 대하여 기존에 수사권이 부여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상 문서와 인장에 관한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 경우 등에 한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권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행정형법 위반 범죄의 수사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할 경우, 단순 횡령, 배임뿐만 아니라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및 “특별형법상의 사기 및 횡령, 배임죄 규정”에도 수사권을 부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임.

「관세법」 등 위반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횡령, 배임행위가 폐이퍼컴퍼니 등 법인을 이용하여 업무상 행해지는 경우 제355조⁵⁾(횡령, 배임)가 아닌 제356조⁶⁾(업무상의 횡령, 배임) 위반이 문제되며, 나아가 위 범죄의 이득액이 일정액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⁷⁾가 적용되기 때문임.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및 같은 편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

5)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6)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

□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세청은, 「관세법」 등 위반 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형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죄에 대한 신속한 증거확보 및 범죄 수익 환수가 강화되는 등 수사 필요성이 인정됨을 근거로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법원행정처는, 사범경찰권의 부여는 해당 분야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 대상 범죄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세관 공무원이 일반 형법상 범죄인 사기죄 및 횡령·배임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특히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를 수단으로 하는 사기 및 횡령, 배임죄의 경우 그 위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경찰청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과 관련하여 개정안 추진 목적은 ‘관세범 여죄 신속 수사’이나, 조사 중 확인된 혐의는 신속히 분리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고발하여 함께 수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현행법 체계상 수사 주체 간 경합으로 인한 혼란 발생으로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행법 상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하여 세관 공무원에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수사권(관세법, 대외무역법,

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이 이미 부여된 점을 감안하여 세관 공무원
은 전문 자금세탁 조직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9

[참고자료 1] 특별사법경찰제도 개관

- 현행법상 사법경찰은 크게 ①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반사법경찰과 ②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두 종류로 구분되고 있음.
- 특별사법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되었고, 2024. 12. 31. 기준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약 14,273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특별사법경찰이 5,995임.

[참고자료 2] 기관별·분야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2024.12.31.기준)

1. 중앙행정기관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법 등 위반 범죄	521
2	기획재정부(국세청)	조세 관련 범죄	5,159
3	법무부(교소도 등)	교도소, 구치소 내 발생 범죄	1,189
4	국방부(방첩사령부 등)	군용물,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 범죄	305
5	병무청	병역법 위반 범죄	59
6	행정안전부(소방청)	소방기본법 등 위반 사범 등	2,199
7	행정안전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3
8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문화유산법 위반 사범	8
9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과)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	26
10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위반 사범	1,004
11	농림축산식품부(국립종자원)	종자산업법 위반 범죄	46
1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등 위반 범죄	193
13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	산림, 임산물, 수렵 관련 범죄	159
14	산업통상자원부(광산안전사무소)	광산안전법 위반 범죄	14
15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	부정경쟁행위, 상표법 등 위반 범죄	49
16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범죄	3
17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범죄	678
18	환경부(환경청)	환경 관련 위반 범죄	87
19	환경부	환경 관련 위반 범죄	1
20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범죄	1,053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21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도로법 등 위반 범죄	55
22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시설 및 열차 안 발생 범죄 등	460
23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
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앙전파관리소)	전파법 등 위반 범죄	133
25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반 범죄	170
26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	어업자원보호법 위반 범죄	494
27	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범죄	19
28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 등 안전 규제 위반 범죄	25
2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약사, 보건범죄 등 위반 사범	41
30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등 위반 범죄	9
31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설비 및 방송통신설비 위반 범죄	23
32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범죄	51
33	대통령경호처	경호업무 수행 관련 범죄	32
합 계			14,273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

2. 지방자치단체별 특별사법경찰 지명현황

연번	기관명	업무분야	지명인원(명)
1	서울특별시	식품, 공중위생, 차량운행제한, 환경 등 관련 범죄	375
2	부산광역시	〃	336
3	인천광역시	〃	368
4	대구광역시	〃	191
5	대전광역시	〃	188
6	광주광역시	〃	196
7	울산광역시	〃	253
8	세종특별자치시	〃	43
9	경기도	〃	669
10	경상남도	〃	375
11	경상북도	〃	622
12	충청남도	〃	517
13	충청북도	〃	519
14	전라남도	〃	460
15	전북특별자치도	〃	277
16	강원특별자치도	〃	590
17	제주특별자치도	〃	16
합 계			5,995

자료: 법무부 형사기획과